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82
----------	------

발의연월일 : 2024. 11. 26.

발 의 자 : 권향엽 · 박지원 · 전재수  
이병진 · 조계원 · 박용갑  
이기현 · 허성무 · 서미화  
조인철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와 특허청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전문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문기관 등록 및 전문기관 대표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및 제51조의2 신설 등).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2.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
3. 임직원 중 특허청 소속 직원(특허청 소속 직원이었으나 퇴직일부 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을 것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체계를 갖출 것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상표전문기관 등록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에”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제5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제52조의2제7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그 대표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1장에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⑤ (생략)  <u>&lt;신설&gt;</u></p>	<p>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1. <u>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u>            2. <u>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u>            3. <u>임직원 중 특허청 소속 직원(특허청 소속 직원이었으나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을 것</u></p>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⑦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  
-----.

제51조의2(상표전문기관 등록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1. 2. (현행과 같음)

3.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제5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제52조의2제7호에 해당

<신 설>

② · ③ (생 략)

<신 설>

하게 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그 대표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